

기획조사 06-060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해 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

요 약

환경, 안전, 위생 등이 많은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결정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 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 유럽의 경우, EU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기술장벽을 철폐하고 단일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CE마크가 EU 25개국 전역 및 기타 유럽 국가들에 적용되고 있어 역외기업들에게는 유럽진출의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

CE마크는 EU 역내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EU 공동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무 표식이다. 대상품목과 인증절차는 EU이사회 지침에 근거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2006년 기준 22개 품목군이 CE 인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CE마크 취득 절차는 1990년 총괄적 접근방식에 따라 제정된 8개의 인증방식(Module A, B+C, B+D, B+E, B+F, G, H) 중 해당 품목 지침이 정한 방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진출희망업체는 수출품목이 CE 대상품목인지 확인 후, 품목별 인증방식 모듈에 따라 '사양확정', '시험실시', '자료준비', '적합성 선언', 'CE마킹'의 5단계 CE 마크 획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역내 시장으로 반입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제품 회수, 벌금부과 또는 징역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EU 회원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도가 있는 바, 영국의 경우 자동차, 통신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안전 관련 TÜV 등 자율인증이 실시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며, 프랑스 NF인증의 경우 자율적이나 소비자 구매 시 결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머리말 / 1

II. EU / 3

III. 독일 / 28

IV. 영국 / 35

V. 프랑스 / 42

VI. 시사점 / 47

I. 머리말

- 환경, 안전, 위생 등이 많은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영향 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 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인증이 의무사항일 경우, 취득 불가 시 시장진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이 되고 있음.
- WTO체제 출범 후 각국의 관세는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추세임.
- 비관세장벽은 크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원산지 규정 등의 전통적 분야와 인증, 환경, 문화(audio-visual)정책 등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내정책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해외시장을 5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 및 '취득절차'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업체들에게 관련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해당 5개 지역의 조사대상국가
 - 구주 : EU, 독일, 영국, 프랑스
 - 러시아/동구 : 러시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북미 : 미국, 캐나다
 - 아시아 :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 중 본 보고서는 ‘구주편’으로, EU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인증과 서구 주요 국가에 별도로 적용되는 인증을 구분하여
살펴봄.

II. EU

1. CE 마크 개요

가. 배경

1) 역내 기술 장벽 제거

- ☐ 유럽 각국은 자국 내 여건에 맞추어 기술규격과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해당규격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규격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왔음.
- ☐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격과 국가표준은 역내 교역에 있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역내 기업의 생산비용증가를 초래함.
- ☐ EU는 역내 기술 장벽을 철폐하고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각종 표준과 인증제도를 통일시키기로 하고, 공동규격의 제반여건을 마련함.

2) EU 공동규격 마련

- ☐ EN (European Norm)
 - 각 회원국이 기존 국별 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통일규격임.

☐ HD (Harmonized Documents)

- EN 규격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기간 내 회원국 별로 상이한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국간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규격임.
- 따라서 EU 각국의 법률적, 기술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용 시 다소간 변경이 가능함.

☐ ENV (European Pre-Standard)

-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 EN 규격 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시행되며 최대 3년 이내 시행기간 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 짐.
- 기술 지도가 시급한 분야, 인명과 상품의 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적용됨.

3) CE 마크 통일

- ☐ 1990년 12월, EU 각료이사회는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총괄접근방식’을 채택하여 EU 표준 및 규격에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의 모듈(절차방식)로 분류하고, 각 지침에서 해당상품에 적용해야할 모듈을 지정토록 함과 동시에 인증표시도 CE 마크로 통일함.

나. CE 마크의 정의 및 적용대상

1) 정의

- ☐ CE 마크는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제품과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됨.
- CE 마크는 불어인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함.
 - 지난 1993.7월 EU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93/465)에 의해 ‘CE Marking’으로 최종 확정됨.
- ☐ CE 마크는 소비자의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됨.
- ☐ 또한 별도로 제정된 지침(directive)을 통해 설계(design) 및 제조(produce) 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필수 요건을 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됨.
- ☐ CE 마크가 부착된 상품은 EU 25개국은 물론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3개국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 CE 마크 적용 국가 >

구분	국가
유럽연합(25)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유럽자유무역연합(3)*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EU 가입후보국(3)**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스위스는 미적용

** EU 가입후보국은 가입즉시 적용

☐ EU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규율적용대상 상품이 동 CE 마크의 부착 없이 유통 중일 경우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또한 EU 지침은 각 회원국이 CE 마크의 사용과 부착에 있어서 지침과 규격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와 함께 적합성 인증서에 서명한 제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CE 마크는 각 대상 품목별 지침(directive)에 정해진 인증절차(module)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지침에서 인증기관(Notified Bodies)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됨.

☐ CE 마크의 대상품목과 인증절차는 EU 이사회 지침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각 회원국은 CE 마크 제도를 국내법에 수용해야 함.

○ 단, 실제 적용방법은 회원국별로 결정 및 시행함.

2) 근거규정

☐ New Approach Directive (1985.5월)

○ 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을 위한 신 접근방식을 채택함.

☐ EU 이사회 결정 90/683 (1990.12월)

○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총괄적 접근방식을 규정함.

☐ EU 이사회 지침 93/68/EEC, 93/465/EEC

○ CE 마크 제도의 일반원칙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 EU 이사회 품목지침 (product directives)

○ 적용대상, 품목별 적용범위, 취득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적용 대상

☐ CE 마크와 관련, 발표된 품목지침은 27개에 이르며, 이들 지침에 의해 규율되는 제품군은 22개로 집계 됨.

< 주요 지침 및 CE 마크 대상 품목 >

분야	대상품목	관련지침
가스기기	가스조리기구, 히터, 온수기	90/396/EEC
수송용 케이블시스템	케이블카, 리프트	2000/9/EC
저전압기기	교류 50-1000 V, 직류 75-1500 V 이하	73/23/EEC
건축자재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89/106/EEC
방폭 장비 및 시스템	방폭 장비	94/9/EEC
민수용 폭약	폭약류	93/15/EEC
온수 보일러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 보일러	92/42/EEC
냉각 및 냉동장치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승강기	승강기	95/16/EC
기계류	공작 및 목공기계, 전기공구, 식품기계	98/37/EC
해양장비	선박용 기기 등	96/98/EC
의료기기	의료기기	93/42/EEC
이식용 의료장비	인공심장 등	90/385/EEC
진단용 의료기기	진단시약, 인체용 계측기	98/79/EC
비자동 저울	산업용, 의료용 일반, 계량저울	90/384/EEC
무선 및 정보통신기기	이동통신 단말기	98/13/EEC
개인용 보호장비	신체 보호용 기기	93/95/EEC
단순압력용기	내부압력 0.5 bar 이상의 용기	87/404/EEC
압력장비	압력 시스템이 포함된 것	97/23/EC
레저용 선박	길이 2.5~24 m 소형선박	94/25/EC
완구류	인형, 장남감, 자전거 등	88/378/EEC
재래식 철도	Trans-European 재래식 철도시스템	2001/16/EC

☐ 각 품목 군별로 CE 마크 적용을 규정하는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품이 복수 지침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 예를 들어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적용 대상 제품 중 일부는 "의료기기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에도 동시에 규율 받는 경우가 발생 됨.

☐ 한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이 복수인 경우 동 제품은 모든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함.

2. 주관기관 및 인증기관

가. 주관 기관

☐ EU 차원에서 CE 마크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없음, 각 회원국별로 CE 마크제도를 이행, 운영 및 관리감독함.

☐ 주관기구는 아니나, 관련 지침의 작성을 담당하는 EU 집행위 부서는 'Enterprise DG III, Unit G1'임.

- 주소 : Enterprise DG, Unit G1, EU Commission B-1049
Brussels, Belgium

- 전화 : +32 2 299 1111

- 홈페이지 : <http://ec.europa.eu/enterprise/>

나. 인증기관(NB : Notified Bodies)

☐ CE 제도 하의 적합성 인증 시 형식승인 이상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EU가 공인한 인증기관(NB)의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함.

☐ 인증기관은 각 회원국 정부가 지정하며, EU 집행위에서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해 공표한 기관들로 EU 지침이 명기하기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② 기술 역량 및 인력의 전문성

③ 시험 수행, 보고서 작성, 인증서 발급, 지침에 따른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

④ 평가 수행 기관 인력들의 비밀 유지

⑤ 국가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유

⑥ ①, ② 조건은 회원국 관계 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CE마크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지역에 관계없이 인증기관(NB)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어느 기관이라도 선택 가능함.

< 국가별 인증기관(NB) 지정현황 >

2006.10.5일 기준

국가	기관수	국가	기관수
호주**	3	일본**	1
오스트리아	41	라트비아	13
벨기에	44	리투아니아	12
캐나다	2	룩셈부르크	8
사이프러스	0	네덜란드	43
체코	31	노르웨이*	16
덴마크	31	폴란드	54
에스토니아	7	포르투갈	28
핀란드	17	슬로바키아	25
프랑스	104	슬로베니아	9
독일	286	스페인	67
그리스	16	스웨덴	45
헝가리	21	스위스**	13
아이슬란드*	3	영국	236
아일랜드	4	미국**	17
이태리	242	총계	1,439

* EFTA 회원국

**EU 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

- ☐ 인증기관은 지침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품 시험, 형식 검사, 설계 및 기술관련 서류 심사, 품질관리, 표준규격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벨기에 인증기관 리스트 >

2006.10.5일 기준

지정번호	기관
NB 0010	LLOYD'S REGISTER OF SHIPPING a.s.b.l.
NB 0026	AIB-VINCOTTE INTERNATIONAL S.A.
NB 0027	BUREAU VERITAS ASBL
NB 0029	APRAGAZ A.S.B.L.
NB 0195	MINISTERE DES AFFAIRES ECONOMIQUES - ADMINISTRATION DU COMMERCE - INSPECTION GENERALE DE LA METROLOGIE
NB 0461	TECHNIGAZ A.S.B.L.
NB 0492	INSTITUT SCIENTIFIQUE DES SERVICES PUBLICS - SIEGE DE COLFONTAINE
NB 0493	CENTEXBEL (WETENSCHAPPELIJK EN TECHNISCH CENTRUM VAN DE BELGISCHE TEXTIELNIJVERHEID - DIVISIE GENT)
NB 0512	AIB-VINCOTTE BELGIUM ASBL
NB 0609	INTERNATIONAL MARINE CERTIFICATION INSTITUTE (I.M.C.I.)
NB 0649	CEBEC
NB 0650	BELCOMLAB
NB 0651	LABORATORIA DE NAYER
NB 0683	KONHEF vzw
NB 0749	BELGIAN CONSTRUCTION CERTIFICATION ASSOCIATION ASBL (BCCA)
NB 0892	TECHNISCH BUREAU VERBRUGGHEN V. Z. W.
NB 0965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DE L'INDUSTRIE CIMENTIERE (CRIC) - NATIONAAL CENTRUM VOOR WETENSCHAPPELIJK EN TECHNISCH ONDERZOEK DER CEMENTNIJVERHEID (OCCN)
NB 1003	BUREAU VOOR TECHNISCHE INSPECTIES, VERENIGING ZONDER WINSTOOGMERK
NB 1134	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CONTRE L'INCENDIE ET L'INTRUSION ASBL (ANPI) - NATIONALE VERENIGING VOOR BEVEILIGING TEGEN BRAND EN BINNENDRINGING VZW (NVBB)
NB 1135	GEOS NV
NB 1136	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E LA CONSTRUCTION (CSTC) - WETENSCHAPPELIJK EN TECHNISCH CENTRUM VOOR HET BOUWBEDRIJF (WTCB) - BELGIAN BUILDING RESEARCH INSTITUTE (BBRI)
NB 1137	ORGANISME IMPARTIAL DE CONTROLE DE PRODUITS POUR LA CONSTRUCTION ASBL (COPRO) - ONPARTIJDIGE INSTELLING VOOR DE CONTROLE VAN BOUWPRODUCTEN VZW (COPRO)
NB 1147	DIRECTION DES STRUCTURES METALLIQUES DU MINISTERE WALLON DE L'EQUIPEMENT ET DES TRANSPORTS (MET - IG 42 - D422)
NB 1148	ORGANISATION POUR LE CONTROLE DES ACIERS POUR BETON (OCAB) - ORGANISME VOOR DE CONTROLE VAN BETONSTAAL (OCBS)
NB 1161	CENTRE TECHNIQUE DE L'INDUSTRIE DU BOIS (CTIB) - TECHNISCH CENTRUM DER HOUTNIJVERHEID (TCHN)
NB 1171	DIRECTION DES STRUCTURES EN BETON DU MINISTERE WALLON DE L'EQUIPEMENT ET DES TRANSPORTS (MET - IG 42 - D423)
NB 1173	WFRGENT N.V. (WARRINGTON FIRE GENT)
NB 1174	INISMA
NB 1175	BELGIAN ORGANISATION FOR SECURITY CERTIFICATION ASBL/VZW (BOSEC)
NB 1176	PROBETON asbl-vzw
NB 1179	SGS BUREAU NIVELLES

NB 1238	VINCOTTE ENVIRONMENT
NB 1265	SGS BELGIUM NV
NB 1271	CONTROLE INDUSTRIEL BELGE A.S.B.L.
NB 1272	ONAFHANKELIJK CONTROLE BUREAU (O.C.B.) V.Z.W.
NB 1476	CERTIPRO, DEPARTEMENT VAN VITO N.V.
NB 1593	MINISTERIE VAN DE VLAAMSE GEMEENSCHAP, DEP. LEEFMILIEU EN INFRASCRUCTUUR, AFDELING METAALSTRUCTUREN
NB 1611	UNIVERSITEIT GENT: VAKGROEP TEXTIELKUNDE
NB 1612	SECO - BUREAU DE CONTROLE POUR LA SECURITE DE LA CONSTRUCTION
NB 1615	BELGORAIL S.A.
NB 1639	SGS SYSTEMS & SERVICES CERTIFICATION EESV
NB 1646	CENTRE DE CONTROLE DE CARNELLE ASBL
NB 1764	MINISTERIE VAN DE VLAAMSE GEMEENSCHAP, DEP. LEEFMILIEU EN INFRASTRUCTUUR, AFDELING BETONSTRUCTUREN
NB 1769	UNIVERSITEIT GENT-TESTCENTRUM VOOR GEVELEMENTEN

다. 유럽규격 작성기관

- ☐ CE 마크의 근거가 되는 각종 유럽 통합규격의 통일화 작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 표준화위원회(CENELEC), 유럽전기통신 표준연구소(ETSI) 등이 있음.

1) 유럽표준화 위원회 (CEN)

☐ 기관명

- 불어 :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 영어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담당업무

- 1960년, 비 전기분야 유럽 통합 표준 규격 제정을 위해 설립

- 기계 건축자재, 의료, 우주항공, 정보통신, 환경, 운송, 에너지 및 수질 분야의 유럽 통합 규격을 계획, 편집 및 선택함.

☐ 회원국 : EU 및 EFTA의 회원국으로, 총 28개국

☐ 사무국 (CEN Secretary General)

- 주소 : Rue de Strassart 36 B-1050 Brussels, Belgium
- 전화 : + 32 2 550 08 11
- 팩스 : + 32 2 550 08 19
- 홈페이지 : www.cenorm.be

2)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CENELEC)

☐ 기관명

- 불어 :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 영어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담당업무

- 1972년, 전기기술 분야 유럽 표준화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

-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제품과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제품의 사양, 전기제품의 품질에 관한 규격을 작성함.

☐ 회원국 : EU 및 EFTA 28개국

☐ 사무국 (CENELEC Secretary General)

- 주소 : Rue de Strassart 35 B-1050 Brussels, Belgium
- 전화 : + 32 2 519 68 71
- 팩스 : + 32 2 519 69 19
- 홈페이지 : www.cenelec.org

3) 유럽전기통신 표준연구소 (ETSI)

☐ 기관명

- 영어 :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 담당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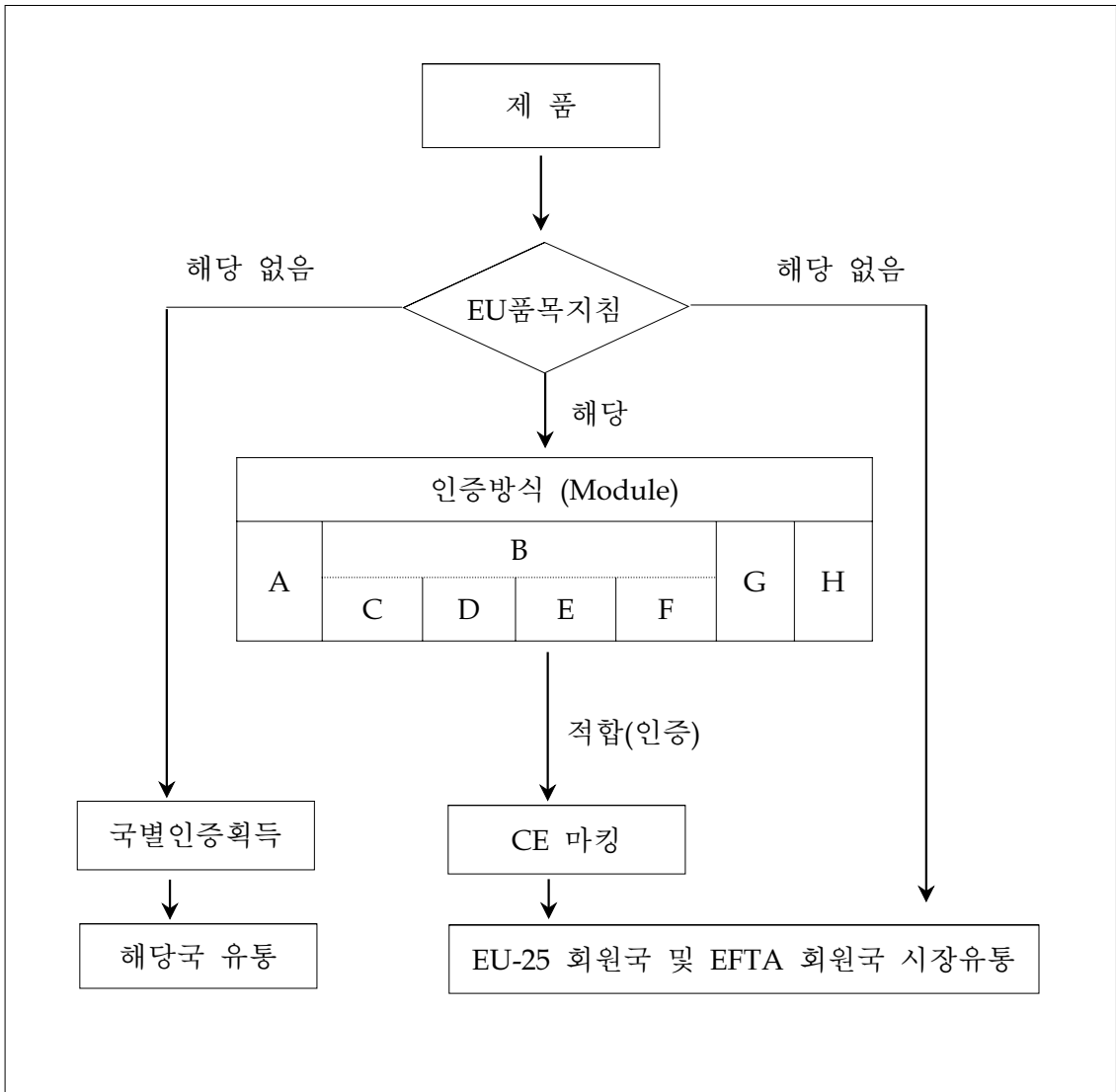
- 1987년 EU 집행위 결의에 따라 1988년 설립됨.
- 유럽 전기통신 규격 및 잠정규격을 작성함.

□ 사무국 (ETSI Secretariat)

- 주소: 650 route des Lucioles 06921 Sophia-Antipolis Cedex
FRANCE
- 전화 : +33 (0)4 92 94 42 00
- 팩스 : +33 (0)4 93 65 47 16
- 홈페이지 : www.etsi.org

3. EU 규격인증 및 CE 마크 절차

< 인증 취득 절차도 >



□ CE 마크 절차는 품목 및 해당품목 지침 규정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1990년 총괄적 접근방식에 따라 제정된 8개의 인증방식(Module) 중에서 해당품목 지침이 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듈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크를 획득함. (대부분의 제품이 해당됨)
 - * 모듈Aa : '모듈A + 공인기관시험'이 개별 또는 부정기적 적용
- 모듈B+C(형식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증명서발급 및 무작위 검사를 실시함.
- 모듈B+D(생산품질보증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심사(ISO 9002)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듈B+E(제품품질보증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심사(ISO 9003)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듈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에 전달하거나 샘플 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함.
- 모듈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제품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 모듈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 공정 제품 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인증시스템에 의해 심사를 실시함.
- 품목별 적용 모듈
 - 저전압기기 : A, Aa
 - 단순압력용기 : B+C, B+F
 - 완구류 : A, B+C

- 전자기정합성 : A, B+C
- 기계류 : A, B+C
- 개인보호장비 : A, B+C, B+D
- 비자동저울 : B+D, B+F, G
- 이식용 의료기기 : B+D, B+F, H
- 가스기기 : B+C, B+D, B+E, B+F, G
- 통신용단말기 : A, B+C, B+D, H
- 온수보일러 : B+C, B+D, B+E
- 민수용 폭약 : B+C, B+D, B+E, B+F, G
- 의료장비 : A, B+D, B+E, B+F, H
- 방폭기기 : A, B+C, B+D, B+E, B+F, G
- 레이저용 소형 선박 : A, B+C, B+D, B+F, G, H
- 승강기 : B+C, B+D, B+E, B+F, G, H
- 압축장비 : A, B+C, B+D, B+E, B+F, G, H

□ EU 역내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이 CE 마크 대상 품목임을 확인 후 하기의 5 단계에 걸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CE 마크 획득 5 단계 절차 >

단계	내용	주요작업
제 1단계	사양확정	○ 해당 상품 관련 위험(risk)이 기술된 규격 확인 ○ 관련 지침상의 필수요건 항목별 정리 ○ 관련 규격과 지침 상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 ○ 사용상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 설명
제 2단계	시험실시	○ 필요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 ○ 관련 규격에 규정된 시험 실시 ○ 작동 검사 실시
제 3단계	자료준비	○ 상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 기술문서 (Technical Construction Files) 작성 ○ 필요시 Sample 검사
제 4단계	적합성 선언	○ 지침상 필수요건과의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 5단계	CE 마킹	○ 품목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안전성 표시 부착 ○ CE 마킹 제작 및 부착

가. 제 1단계 : 사양 확정

- ☐ 대상품목이 소비자의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 차원의 위험성(risk)이 있다고 EU 지침으로 공표된 경우, 관련 EN 규격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함.

- CE 마크에 관련된 품목지침(product directive)은 소비자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제품이 필수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함.

☐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화하여 증명함.

- EN 규격에 의거하여 부착된 CE 마크는 자동적으로 해당 지침상 필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임.

☐ 또한 특별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련 위험에 대한 라벨링, 경고문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였는지를 문서로 설명함.

나. 제 2단계 : 시험 실시

☐ 지침이 A 이외의 모듈을 적용 하도록 규정한 경우, 혹은 A 모듈을 선택했더라도 인증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 인증기관은 CE 마크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술 문서에 첨부하기 위한 시험검사 기술보고서를 작성함.

☐ 총괄적 접근방식 도입으로 EU 지침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는 8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 모듈(A, G, H)이거나 복수(B+C, B+D, B+E, B+F)로 조합하여 적용하는 절차로 구분됨.

- 어느 경우라도 제조자는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반드시 모두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 모듈 A, G, H는 설계와 제조 단계 평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모듈 B는 설계 단계의 평가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단계 검사 모듈인 C, D, E, F와 조합되어 적용 됨.

다. 제 3단계 : 자료의 준비 (제품 사용설명서 및 기술문서)

- 제품사용설명서(manual)는 해당 지침 상 필수 요건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 설명서상 오류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품을 제조한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생산자는 제품이 지침 상 필수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작성해야 함.

※ 기술문서 구성내용

-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제품의 명칭
- 제품개요서 (도면, 부품, 제어회로 등)
- EU 지침 및 EU 규격의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조사 명세서
- 각종 시험 자료 (data)
- EU 지침의 필수요건
- 관련 규격 목록 (EN 규격 또는 해당 국가 규격)

- 제품설계에 사용된 기타 사양서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작성한 기술보고서
 - EU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증명서 및 번호
 - 사용 설명서 (Manual)
 - 제품 카탈로그
- ☐ EU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인증기관은 샘플검사를 실시하는데, 제품의 형식이 관련 지침의 필수요건에 적합함이 인정될 경우, 인증기관은 제조자에게 EU 샘플 형식시험 인증서(증명)를 발급함.

라. 제 4단계: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 ☐ 적합성 선언서는 제품사용 설명서(Manual)와 동일언어로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임.
- 추가로 영어, 불어, 독일어 중 한 언어를 선택하여 동일 선언서를 번역 첨부해야 함.
- ☐ 적합성 선언서 견본은 제조자 또는 EU 역내 대리인이 보관하고, 판매자는 사본을 취급 설명서와 함께 배포해야 하며, EU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참고로 최종제품 생산 후 최소 10년간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하며, 적합성 선언서는 제품 통관 시 EU 회원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임.

※ 적합성 선언서 구성내용

- 제조자 또는 EU 역내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제품의 명칭
- 제품의 형식 및 제조번호
- 시험 검사증명서 번호 또는 형식검사증명서 번호
- 필요 시 적합성 대상 EN 규격, 국내기술규격 및 사양서

마. 제 5단계: CE 마킹 부착 (이사회 결정 93/465 EEC)

- ☐ 동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 CE 마크는 '제품이 총괄적 접근방식에 의거한 품목지침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유일한 표식이며, 회원국은 CE 마크 외에 CE 지침의 제반 규정과 일치하는 다른 인증마크를 자국의 국가규정에 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
- ☐ CE 마크는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며, 제품에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포장이나 첨부된 문서에 부착할 수 있음.

□ CE 마크는 눈에 잘 보이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하며, 가로-세로 1mm의 정사각형 모눈종이에 14mm 내원과 20mm 외원 등 두개의 원이 겹친 모양으로 작성되어야 함.

○ 마크의 크기를 확대/축소 시에도 동 비율을 유지해야 함.

□ CE마크는 제조자 또는 역내에 설립된 제조자의 지사에서 부착함.

○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U 역내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가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EU 회원국이 CE 마크 부착의 부당함을 입증할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는 해당 제품을 회원국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EU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역내 시장 유통을 제한 또는 금지하게 됨.

4. 미 이행 시 제재 및 유의사항

가. 미 이행 시 제재

- ☐ EU 이사회 규정은 각 회원국이 CE 마크를 국내법으로 도입하여 시행해야 할 의무를 설정하고 있음.
- ☐ 따라서 CE 마크의 운용 및 관련 통관검사, 시장감시 및 단속, 위반 시 조치는 각 회원국의 의무이자 관할 사항임.
- ☐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역내 시장으로 반입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제품 회수, 벌금부과 또는 징역형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 처벌 규정은 각 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으나, CE 마크 부착의무 위반 시 수입업자에게 최대 7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나. 제조물 책임제도 (PL : Product Liability)

- ☐ 영리목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자체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생산자가 이에 대한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도임.
- ☐ EU는 1985년 이사회 지침으로 EU 차원의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각 회원국에 통일된 입법을 유도하여 왔음.
 - 동 제도는 미국과 달리 제품이 초래한 피해액 이내의 배상금 지불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EU 회원국 세관은 CE 마크에 대한 식별과 적합성 선언서 접수만으로 별도 세부사항 확인 없이 제품을 통관시키고 있으나,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안전사고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나 경쟁업체 혹은 소비자의 제소에 따라 CE 마크 적합성 사후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동안 상품 안전성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이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을 확보 하고 있느냐의 증명서가 CE 마크라고 할 수 있음.

III. 독일

1. 개요

- ☐ 독일에서만 유효하고 수입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인증제도는 없음.
- ☐ 다만 CE 마크 획득이 의무인 품목이 있으며, 동 검사 및 시험은 독일 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음.
- ☐ EU 지침의 안전규정에 따라 독일 내에서도 소비자용품 안전법(Geraetssicherheitsgesetz; GSG) 충족 기준이 있어, 동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품목에 따라 TUEV 인증 및 GS 마크를 받을 수 있음.
 - 동 인증들은 법률적 강제성은 없으나, 사고 발생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강제인증으로 볼 수 있음.
 - 더불어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안전 관련 인증 및 마크를 구입의 결정요인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인증들은 독일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2.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 ☐ TUEV(Technischer Ueberwachungs-Verein; 기술검사협회)는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공인 시험기관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에서 일반 완구류,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다양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TUEV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유럽에 널리 사용되는 ‘CE 마크’ 및 독일 내 안전 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GS 마크’가 있으며, 동 마크 부여를 위한 검사 및 시험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부문에서는 독일 안전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하는 TUEV 자체 인증인 ‘TUEV CERT’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부문 관련 안전 및 품질 검사가 있음.
- ☐ TUEV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독일 전역 및 EU 내에서 효력을 발휘함.
- ☐ 한편 TUEV는 총괄본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독일 전국에 개별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음.
- ☐ 각 사업체마다 담당하는 검사 품목이 다르며 담당 품목이 겹치는 경우,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
- 시험/검사 가격 및 기간은 품목마다 다르며, 인증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시험 실시 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분야별, 지역별로 수십 개의 TUEV 인증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체는 TUEV Sued(남쪽), TUEV Rheinland(라인강 지역), TUEV Nord(북쪽)의 세 기관이며, 규모면에서 보면 TUEV Saarland 및 TUEV Thuringen이 있음.

① **TÜV Sueddeutschland AG**

- 주소 : Ridlerstr. 65, D-80339 Muenchen
- 전화번호 : +49 89 5791 2500
- 팩스번호 : +49 89 5791 2197
- 이메일 : PVU-Muenchen-Angebotslesung@tuev-sued.de
- 홈페이지 : www.tuev-sued.de

② **TÜV Rheinland AG**

- 주소 : Am Grauen Stein, D-51105 Köln
- 전화번호 : +49 221 8 06 13 71
- 팩스번호 : +49 221 8 06 39 09
- 이메일 : althoff@de.tuv.com

③ **TÜV Nord Gruppe GmbH**

- 주소 : Große Bahnstraße 31, D-22525 Hamburg
- 전화번호 : +49 40 8557 -2573
- 팩스번호 : +49 40 8557 -2429
- 이메일 : hbalfanz@tuev-nord.de

④ TÜV Saarland GmbH

- 주소 : Am TÜV 1, D-66280 Sulzbach
- 전화번호 : +49 6897 506178
- 팩스번호 : +49 6897 506198
- 이메일 : boris_gehring@sgs.com

⑤ TÜV Thuringen e. V.

- 주소 : Rudolstaedterstr. 41, D-07745 Jena
- 전화번호 : +49 3641 3997 40
- 팩스번호 : +49 3641 3997 71
- 이메일 : zertifizierung@tuev-thuringen.de
- 홈페이지 : www.tuev-thuringen.de

□ TUEV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독일 내에서도 동일한 인정을 받음.

- 따라서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및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우리 업체의 경우 TUEV 국내 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TÜV Rheinland Korea Ltd.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엔씨벤처드림타워 6차 (우. 152-719)
- 전화번호 : +02 860 9860
- 팩스번호 : +02 860 9861
- 홈페이지 : <http://www.kor.tuv.com>

② TÜV Rheinland Korea Ltd. (대구)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 2동 177-4, 교원공제회관 12층
(우. 706-715)
- 전화번호 : +053 745 6411
- 팩스번호 : +053 745 0907
- 홈페이지 : <http://www.kor.tuv.com>

③ TÜV Rheinland Korea (창원)

- 주소 : 창원시 중앙동 93-2, 교원공제회관 7층 (우.
641-742)
- 전화번호 : +055 264 9234
- 팩스번호 : +055 264 9240
- 홈페이지 : <http://www.kor.tuv.com>

3. 강제인증 승인절차

가. 검사 신청

- ☐ 독일 또는 한국 내 TUEV 기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회사소개서 및 제품 설명서를 보내면, TUEV 측에서 관련 서식 및 계약서를 송부함.
- ☐ TUEV에서 받은 검사 신청서, 계약서, 인증발급 조건 및 사후관리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함.
- 최근에는 TUEV 측에서 제품 사진을 첨부로 요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명서에 사진을 추가하는 것이 좋음.

나. 샘플 검사 시행

- ☐ 업체의 품목 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TUEV 기관에서 신청 제품의 샘플 검사 및 실험이 실시 됨.
- TUEV 내부적으로 어떠한 실험이 실행되는지는 업체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나, 검사 기준 미달에 의해 불합격 판정 시 업체측에서 추가 비용부담을 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공장 검사

- ☐ 샘플 검사를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서 및 공장 방문 보고서가 발급됨.
- ☐ 공장 검사는 합격한 샘플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제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검사된 샘플 품목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게 됨.
- 단 공장 검사 실시 전에 업체에서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승인받은 경우는 문제없음.

라. 사후 검사

- ☐ TUEV에서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 확인을 위해 1년에 한번 씩 샘플 검사 및 공장 실사가 행해짐.
- ☐ 인증서 효력이 끝나는 5년 뒤에는 특별 검사가 실시됨.

4. 미이행 시 제재사항

- ☐ 미이행 시 법적 제재 사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IV. 영국¹⁾

1. R & TTE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가. 개요

☐ 통신규격으로 강제인증임.

☐ 유·무선 단말기, RF이용 무선기기, ISDN-Terminal, GSM 단말기의 영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와 함께 R & TTE 인증을 받아야 함.

나.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 BABT (British Approvals Board for Telecommunications)

- 1982년 설립되었으며, 통신 단말기(R & TTE)에 대한 인증업무, EU Notified Body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함.

- 주소 : Claremont House 34 Molesey Road, Hersham, Walton-on-Thames, Surrey KT12 4RQ, UK

- 홈페이지 : www.babt.co.uk

☐ 주요 대상품목

- 유·무선 전화기, FAX, Modem ISDN-Terminals, DECT, GSM-Phones 등임.

1) CE인증은 영국에서도 적용됨.

☐ 강제인증 승인절차

○ 검사 후 통과 시 인증

☐ 미 이행 시 제재사항

○ 영국 내 판매 불가

2. E-마크

가. 개요

☐ 영국의 자동차류(motor vehicles) 관련 형식승인 및 강제인증

○ 1970년 2월, EU 집행위는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지침 70/156/EEC)'라는 자동차분야의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함.

○ 동 지침에 따른 EU 형식승인이란, 동 제도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역내 자동차는 관련 각종기술 지침 및 규격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각 회원국의 지침들은 사실상 서로 상이하여, 1992.12월 전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고자 할 때 부분적으로 해당국의 형식승인을 재발급 받아야 했음.

- EU는 1992.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및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92/53/EEC 지침)'을 도입하여, 1993.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주관기관

☐ VCA (Vehicle Certification Agency) : www.vca.gov.uk

다. 주요 대상품목

1) 카테고리 1

- ☐ 카테고리 M :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3륜 승객 운송 자동차
- ☐ 카테고리 M1 : 사람운송용으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하의 자동차
- ☐ 카테고리 M2 :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 중량 5톤 미만
- ☐ 카테고리 M3 :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 중량 5톤 이상

2) 카테고리 2

☐ 카테고리 N : 적어도 4륜, 또는 최대 중량 1톤이 넘는 차로서 화물 운송 자동차

☐ 카테고리 N1 : 최대 중량 3.75톤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차

☐ 카테고리 N2 : 최대중량 3.75~12톤의 상용차

☐ 카테고리 N3 : 최대중량 12톤이 넘는 상용차

3) 카테고리 O : semi-trailer를 포함하는 트레일러

☐ 카테고리 O1 : 최대중량 0.77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

☐ 카테고리 O2 : 최대중량 0.775~3.75톤의 트레일러

☐ 카테고리 O3 :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 카테고리 O4 :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라. 강제인증 승인절차

☐ 신청서 제출

☐ 주관기관은 국내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신청자 서류 송부와 동시에 형식시험을 요청함.

☐ 지정기관은 EU지침에 의거 샘플의 시험 검사를 실시하며,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나 자료들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지정 시험기관은 시험성적을 나타내는 형식시험보고서를 작성함.

☐ 주관기관에 보고서를 송부함.

3. 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 제도 개요

- 영국의 안전규격, 비강제규격 인증기관임.
- BSI는 전 분야에 걸쳐 국가규격을 작성, 보급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음.
- 한국의 KS에 해당함.

☐ 주관기관

- 영국 내
 - 주소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 Park Street, London W1A 2BS, U.K.
 - 전화번호 : +44 71 629 90 00
 - 홈페이지 : www.bsi.org.uk

○ 한국 지사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21층
110-789
- 전화번호 : +02-777-4123
- 팩스번호 : +02-777-4446
- 홈페이지 : www.bsi-korea.com

□ 주요 대상 품목

- 건축, 토목자재,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조선용 기자재, 항공기부품, 특수인쇄기 등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전원으로 작동되는 가정용 음향기기 및 TV의 안전요구사항"에 관련된 기기에 적용되고 있음.

□ 인증 승인절차

○ 신청의뢰

- 신청자 : 신청서 + 신청비 납부
- Questionnaire 작성
- 품질 매뉴얼
- 품질 계획서

○ 평가

- 'quality manual'과 'quality plan'에 대한 평가

○ 사전 공장 심사 (Pre-License Factory Assessment)

○ 라이선스(License) 획득

☐ 미 인증 시 제재사항

○ 강제인증이 아니므로 제재 사항이 없음.

V. 프랑스

1. 개요

- ☐ 프랑스 내에서만 유용하며, 프랑스에 수출을 위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제도는 없음.
- 프랑스에서도 유럽전역에 효력을 발휘하는 CE가 적용되나,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인증은 없음.
- 반면 강제성이 없는 자율인증인 NF마크가 품질보증제도로 시행되고 있음.

2. NF마크

가. NF 마크란

- ☐ NF 인증은 프랑스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인증제도로, 프랑스에 수출하기 위해 동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강제적이지는 않으나, 프랑스 국내에 유통 중인 거의 전 품목이 NF마크를 획득하고 있음.
- 이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NF인증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임.
- ☐ 공산품을 비롯해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 취득이 가능함.

나. NF마크의 종류

- ☐ NF : 일반 공산품에 부여하는 마크
- ☐ NF Environment : 환경, 생명공학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 ☐ NF Agro-alimentaire : 농산물 및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
- ☐ NF Service : 서비스 상품에 부여하는 마크

3. 주관기관

가. AFNOR (ASSOCIATION FRANCHISE NORMALISATION)

- ☐ 동 기관은 NF마크의 심사에서 인증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산하 단체임.
- ☐ 기능
 - 프랑스 실정에 맞는 인증 및 표준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
 - 국제적인 인증획득에 관한 참고자료 제공
 - 인증 심사 및 인증마크 부여

☐ 조직

○ AFNOR

- 프랑스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기관으로서 행정적인 감독을 받음.
- CEN, ISO 계열 인증과 관련 프랑스 내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AFAQ-AFNOR

- AFNOR 그룹의 지주회사격으로 모든 전략적, 기능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있음.

○ 그밖의 NF인증마크 부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AFAQ AFNOR Certification에서 주관하며, CAP AFNOR와 같은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음.

○ 주소 : 11 Rue Francis de Pressense 93571 La Plaine St-Denis cedex

○ 전화번호 : +33 1 41 62 80 00 / 팩스 : +33 1 49 17 90 00

4. NF마크 승인절차

☐ NF마크 승인 취득을 위해서는 하기 절차를 수행해야 함.

○ Certification Request

- 인증부여를 신청하는 단계임.

- 신청 전 NF마크 취득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valuation and Decision

- NF Network라고 불리는 심사위원단에 의해서 시행됨.
- 제품의 안전 및 효율성 등 품질에 관한 다양한 점검과 실험이 행해짐.

○ Communication

- NF 마크 부여 결정단계임.

○ Periodic Monitoring

- NF 마크 부여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행해짐.
- 이는 마크를 부여한 시기와 품질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함임.

□ NF Network

- NF마크 부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AFAQ AFNOR Certification'에서 소집하는 임시조직임.
- 과학, 기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소 및 단체로 구성됨.
- 이들에 의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평가와 테스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은 NF EN 45011, 혹은 NF EN ISO/CEI 17025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5. 미 이행 시 제재사항

☐ 없음.

VI. 시사점

- ☐ 인증과 같은 기술규격은 EU시장 내에서 가장 진보한 공동 정책 분야 중 하나로, CE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음.
- ☐ CE(‘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 의미)는 강제인증이며, EU-25개국은 물론 기타 유럽 국가들에도 적용되고 있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이 되고 있음.
 - EU와 인증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업체들은 KS마크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EU 진출을 위해서는 분야에 따라 별도로 CE마크를 획득해야 함.
- ☐ CE인증은 2006년 기준 22개 품목군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EU 진출희망업체는 우선 자사 수출희망제품의 CE 적용대상 여부 및 적용 모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CE 적용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적용 모듈 : 본 보고서 EU편 참조
- ☐ 수출희망품목이 CE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 EU 수출국에 그 밖의 동 국가에서만 유효한 인증이 있는지 확인함.
 - EU 회원국 내 독자적 인증은 감소추세이며, 존재 시에도 자율인증인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유럽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등의 구매에 선호가 큰 것을 감안할 때, 인증부착여부가 제품의 판매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국의 자율인증 획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수출희망품목이 CE 대상품목일 경우 하기의 'CE마크 획득 5단계'를 수행해야 함.
 - CE 마크 획득 5단계 절차 : 사양확정, 시험실시, 자료준비, 적합성선언, CE 마킹
- 업체가 스스로 '적합성 절차'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수출희망품목이 인증기관의 기술심사 등을 필요 시 인증기관 (NB : Notified Bodies) 및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인증 취득 절차를 취해야 함.
 - 품목의 모듈과 관계없이 제조자는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반드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 CE 인증기관(NB)은 EU 각 회원국이 지정하거나, EU와 '인증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한정되는데, 일부 EU 인증기관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음.
 - 국내 CE 인증기관 : TUEV Rheinland Korea Ltd. (www.kor.tuv.com), 한국 SGS (www.kr.sgs.com), BSI Korea (www.bsi-korea.com) 등

- 그 밖에 자문 가능기관 : 산자부 기술표준원 (www.ats.go.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등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랜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06-056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10
06-057	한-리비아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10
06-058	FTA 통한 분야별 해외기업 성과 제고사례 분석 - 미국과 FTA 체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	2006.10
06-059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 251개 일본 수입상 모니터링 조사 -	2006.10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 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06-024	독일 자동차 부품 OEM 납품 가이드	2006.9
06-025	KOTRA 해외마케팅사업 성공사례	2006.10
06-026	우리 기업의 국제협상.계약 실패사례	2006.10
06-027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10
06-028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2006.10

□ 산업폐이퍼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06-003	한미 FTA, 새로운 대미진출 기회와 활용방안	2006.10

□ 산업연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작 성 자

- ◆ 유희숙 차장 (런던 무역관)
- ◆ 신정수 과장 (파리 무역관)
- ◆ 이제혁 과장 (브뤼셀 무역관)
- ◆ 정윤서 과장 (밀라노 무역관)
- ◆ 조세정 대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 신순재 과장 (해외조사팀)

해 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